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8, pp. 85-95,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8.085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김혜진
글로벌 디지털 성범죄 정책 연구소 대표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igital sex crime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issues and direction of the sex crime policy in Korea: case studies of the U.S., Australia, Japan, and Germany

Hyejin Kim
Global Digital Sex Crime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해외디지털 성범죄, 성범상, 법적공백

Abstract It is a newly defined concept of digital sex crimes as the sex crime pattern in Korea is integrated with digital technology.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 of digital sex crimes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gaps are identified.It is also aimed at drawing up appropriate responses to domestic situations compared to cas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adopted the mode of literature research.It used related data from government agencies, various statistics and survey data, seminar data organiz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fice, women's organizations, and research reports. The ultimate goal is to derive the problem situ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ystem.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digital sex crimes that are being expanded and reproduc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It also points out that the legal vacuum caused by the law's failure to keep up with the law needs to be continued.Our conclusion is that we should actively accept best practices from abroa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mmunity value in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become "monitors" in the recognition that they may be perpetrators or victims.

Key Words : Telegram sexual exploitation case, digital sex crim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digital sex crime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Author : Hyejin Kim(rossojk@gmail.com)
Received July 16, 2020 Revised August 4, 2020
Accepted August 20, 2020 Published August 28, 2020

1. 서론

1.1 연구 배경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간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이와 함께 각종 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모의·실행되어 유포되는 방식 역시 더욱 용이해졌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범죄는 성 착취물이 인터넷을 통해 익명의 다수에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고 무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사회 각층에서 법적, 사회적,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범죄의 발생은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폭력인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관련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기술적, 문화적 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경험과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1].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한다. 먼저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 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관련하여 외국의 법령과 정부 기관의 통계, 공식 홈페이지, 연구 보고서, 입법 자료 등의 공적 자료와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관련 자료, 학술 연구 논문 등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2.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온라인 성폭력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온라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이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2]"로 정의되어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개념과 혼용되었다. 이 시기 온라인 성폭력은 그 대상이 단지 언어적인 표현에 한정되었다. 또한 현실과 유리된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가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3]. 그러나 이후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되었다. 즉 음란물의 비동의 촬영 및 비동의 유포 행위가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제작, 유포, 소비되면서 이러한 범죄 유형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협박·유포·전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2015년에 국내 최대 불법 촬영 및 피해 촬영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운동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2017년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범죄로 간주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와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또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뿐 법률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만을 위한 법률은 부재 상태여서 적용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법안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 예를 들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음란물을 상대에게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현행법상 '제시'에 해당되는데, 이 '제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4].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을 힘입어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2.2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2.2.1 영속성

디지털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에 비해 직접적인 피해가 적다는 인식 때문에 피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 범죄물이 한 번 온라인상에 유출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피해 당사자의 트라우마는 일반 성범죄 피해자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될 수 없을 만큼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주된 이유는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 당사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이 훼손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5].

2.2.2 젠더 폭력과 왜곡된 성 인식의 재생산

디지털 성범죄는 2010년대 이후 대두된 '여성혐오(misogyny)'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언급, 퇴폐적인 농담 등으로 인한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고, 실제 범죄 행위도 특정 여성을 타겟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다, 성별과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위협과 폄훼[6]가 온라인상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거나 편견이 생길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자가 동의해서 촬영된 촬영물이 불법으로 유포되었을 경우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기 쉽다. 즉 자발적인 또는 동의에 의한 촬영물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시각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7,8]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피해자의 신고나 조치를 지연시키고 회복되기 곤란한 피해 상황까지 진전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8].

2.3 디지털 성범죄 유형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와 재생산 속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나타났다.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했고, 해당 사이트는 유료화로 범죄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는 조직적인 기업의 성격을 띠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⑴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용변을 보는 행위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⑵ 비동의 상태에서의 유포 및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 ⑶ 유통 및 공유: 영리 목적으로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 ⑷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불응 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유포를 암시하는 등의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 ⑸ 사진 합성: 피해자의 일상 속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한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⑹ 성적 괴롭힘: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9].

3. 국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과 대응 현황 및 법제도의 한계

3.1 국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2018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는 4,584건에 이른다. 그중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6,470건에 이르렀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불법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 건수는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자는 여성이 1,695명(87.6%), 남성이 241명(12.4%)이라고 발표했다[4].

3.2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차례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피해자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었고,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악질적이어서 기존 대책의 한계를 절감하게 했다.

이에 정부는 9개의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TF를 구성, 강력한 대책안 마련에 나섰다. 그 과정에 관련 전문가 및 여성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신종 범죄 근절 및 처벌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2020년 4월 24일 발표된 정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범죄로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대 성범죄를 획책하는 행위 역시 처벌하기 위해 예비 음모죄를 신설, 실제로 범행에 이르지는 않고 합동 강간 및 미성년자 강간을 준비하거나 모의만 했더라도 중대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국민 정서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며, 가해자 신상 공개 범위와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처벌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잠입수사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셋째, 수요를 차단하고 인식을 개선한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 찾아서 보기만 하는 행위 역시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소지죄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에만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넷째,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자발적 성매도자'인 피의자로 간주하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주저하게 되므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을 피해자로 규정, 처벌하는 대신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또 피해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라인 유포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 시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 24시간 동안 유지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내실 있게 가동하며 삭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역시 강화한다. 사업자가 발견 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위반 시엔 제재 수단으로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 사업자가 불법 성 범죄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 규정도 도입한다. 피해자를 2차 피해 및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단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획득한 정보를 유출할 경우 가해지는 제재의 수위를 상향 조정한다[10].

17년간 운영된 소라넷은 100만 명의 가입자가 존재했으나 운영자 4명 중 1명밖에 처벌받지 않았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운영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국회에서 신속히 의결되어야 할 사안이다[10, 11].

3.3 국내 법 제도의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통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며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 채택된 용어이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을 전부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죄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선고되기도 한다. 예컨대 「성폭력특별법」은 촬영 대상을 '신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생산된 촬영물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촬영자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된 영상물을 재촬영하거나 가공 또는 합성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고려하면 불법 유포가 더욱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다. 실제 선고형도 죄질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해의 심각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고 있는 점도 현 제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접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상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지

적된다[12].

4.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제 및 법제도 분석

4.1 미국

4.1.1 영상 관음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미국의 디지털 성폭력(digital sexual violence)은 한국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보통법 및 연방헌법을 기반으로 도출되는 개인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불법행위법(tort) 체계에 구성되면서, 불법촬영으로 야기되는 문제 특히 관음 행위는 사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기술의 향상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촬영 수법 및 유포되는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관음 행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200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주법에 근거해 영상감시장치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음 행위 및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목적을 위한 신체 촬영행위가 '영상 관음 행위(video voyeurism)'로 규정되어 형사법 체계에 포섭되었다. 그러나 영상 관음 행위에 대한 규제는 주(state)별로 내용이 다르고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자 연방법률의 제정에 대한 요구가 점점 확대되었다. 이에 2004년 「영상 관음 행위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18 U.S.C.A. §1801)」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불법촬영 보호 법익을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보고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13].

4.1.2 비동의 유포 행위의 개념 및 처벌 규정

현재 미국 27개 주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로 기소하고 있다. 그런데 리벤지 포르노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괴롭힘(알래스카), 사생활 침해(조지아), 무질서한 행동(캘리포니아)과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범죄 혐의에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단독 범죄로 처벌되더라도 은밀한 이미지(an intimate image)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급한 행위(오리건,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또는 개인 이미지(private images)를 공개(노스캐롤라이나)하거나 은밀한 이미지를 배포(유타)한 정도로만 표현되고 있어 그 저변에 '복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먼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에 따라 '성적 이미지의 동의 없는 유포 행위'도 리벤지 포르노 관련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14]. 불법 유포 문제는 최근 그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유포와 관련된 법안은 2004년 뉴저지에서 처음 입법되었고 그다음 20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경미한 범죄로 다루어졌다. 그 후 2014년 아리조나주에서 입법한 법안에 대해서는 2015년에 사법부가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2013년 이전까지 이를 주 형사법에 규정한 주는 뉴저지와 알래스카와 텍사스, 3개 주뿐이었으나 2020년 현재는 40개의 주 및 워싱턴 D.C.에서 이와 관련한 법규를 두고 있다. 다만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해 주마다 법규의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연방법률의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4, 15].

4.1.3 범죄 행위 주체와 불법성 정도에 따른 차등 처벌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이 대상인 경우에는 「아동성학대법(The Children of Sexual Exploitation Act of 1977)」이라는 연방법률을 적용한다. 「아동성학대법」의 위법은 중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은 벌금형이지만 재범부터는 최하 15년 이상 최대 3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동일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거나 아동포르노의 구체적 상황이 공격성을 띠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즉 아동포르노 에 사용된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폭력적, 가학적 성향을 담고 있는 경우 및 미성년자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 성 착취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중에는 섹스팅(sexting)이 있다. 이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자신의 누드 또는 노출 사진,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나 채팅, SNS 등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킨다[16]. 2017년에 13-26세의 미국 청소년 1,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여자는 71%, 남자는 67%가 자신의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여자 21%, 남자 39%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와 더욱 친밀해지거나 성적인 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15%

는 자신의 누드사진을 보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섹스팅을 경험한 이들 중 25%는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행한 섹스팅이 현실에서의 성적인 행위보다 더 공격적이고 거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섹스팅 경험자 중 여자 48%, 남자 46%는 상대방에게 받은 누드 혹은 부분 노출 사진을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동성학대법」은 성인에 의한 아동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만 섹스팅 관련 법안은 미성년자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의 주체와 불법성을 감안하여 처벌 시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동의 없이 전송받은 경우, 전송받은 사실을 부모 등 법적 대리인이나 학교,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 받은 이미지를 폐기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송 또는 배포하지 않은 경우 등을 책임조각 사유로 규정하여 '소지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었다[16].

4.1.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최고 헌법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심의나 강제적 규제를 정부 주도 하에 시행하기보다 법령을 통해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써 개입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구도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공립학교 및 도서관의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필터링 등의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비동의 성적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동의 성적 동영상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대상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이버인권보호기구(CCRI)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지원 단체(BADASS)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16].

4.2 호주

4.2.1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의 개념 및 형사처벌 규정

호주의 '법률 및 헌법 업무 참조 위원회(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 Committee)'는 기존에 사용되던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빠르게 수용하고 용어 사용을 권장했다. 포르노그래피라는 용어는 초점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호주 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의 인식을 고려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호주의 법률과 행정문서 등에는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전환이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수용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국가가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호주는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잘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7, 18].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테리토리로 나누어져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와 테리토리에서 이미지 기반 학대에 관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8년 「온라인안전강화법2015」와 기존의 「형법」(Criminal Code Act 1995)이 개정된 「온라인안전강화법2018」(Enhancing Online Safrey Act 2018)에 대해서만 다룬다. 1995년의 「형법」은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시기의 법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침해적이고 범죄를 유발하는 내용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 징역 3년, 내용이 성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징역 5년을 구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 후 2015년에는 인터넷안전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그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라인안전강화법2015」이 입법되었다. 이 법은 인터넷 안전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안전위원회는 해당 소셜미디어에 48시간 이내에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안전위원회는 2015년 당시에는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아동안전위원회로 출발했다. 그런데 기술을 동반한 가정폭력 및 이미지 기반 성착취인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7년 인터넷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온라인안전강화법2018」(Enhancing Online Safrey Act 2018)으로 개정되며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과거 연방 차원 또는 주나 테리토리 차원에서 형사법적으로 행해진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속하게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8시간 이내 삭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개인은 호주달러 최

대 10만 5,000달러까지, 기업은 호주달러 최대 52만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17, 18].

4.2.2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권한 및 법적 조직의 필요성

호주에서 인터넷안전위원회(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는 연방 정부 법정 기관(Commonwealth Government Statutory Authority)으로서 그 권한이 막강하다. 이와 같은 법정 기관은 주 정부를 대신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인터넷안전위원회의 '2018-19 연례보고서'에서는, 삭제 요청된 이미지 기반 학대 건의 90% 정도가 처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 「온라인안전강화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관의 권한은 더욱 보장받고 있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를 드러내고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8].

4.3 영국

영국에서는 해외 주요국 중에서도 미국과 함께 일찍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은 '관음 행위(Voyeurism)', 불법 유포는 '리벤지 포르노'로 통용되어 온 점 역시 미국과 비슷하다. 불법 촬영의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 행위에 대한 이미지를 기록하는 행위를 2003년의 「성범죄법」에 따라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 그런데 이 법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의 자유가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촬영으로 제한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해는 보통법(Common Law)상 공공 음란행위(outraging public decency)로만 규제하였다. 이에 영국 의회는 이러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2019년 관음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켜 성기, 엉덩이 또는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가해할 의도로 그리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를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함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영국은 상대가 비동의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유포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형사사법 및 재판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에 비동의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기에서는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해서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의 사적 성적 사진 및 영상 공개"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적인 성적 사진 혹은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제33조)고 규정하였다. 또한 여기서 '성적'과 '사적'이란 성기나 항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체 노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사고력의 소유자가 이미지 그 자체 혹은 전체 내용을 성적이라고 판단하는 것까지 의미한다(제35조 제1항-제3항). 또한 규정은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까지 포섭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촬영 또는 녹화된 사진이나 영상이 그 자체로 사적이거나 성적이지 않거나 변경이나 합성의 결과로 사적이거나 성적이 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적용되는 '사적 또는 성적 사진 및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5조제4항제5항).

스코틀랜드가 제정한 「2016년 학대 행위 및 성적 침해 법안」(the Abusive Behaviour and Sexual Harm (Scotland) Bill)에서는 사적인 성적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징역을 선고하는 법을 입법하여 영국보다도 법정형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국가에서의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중 하나인 "개인에게 고통을 줄 의도"라는 것은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스코틀랜드는 고의성에 '부주의'까지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입증 부담을 낮추었다[19-21]. 실제로 비동의 유포 행위는 단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괴롭히고자 하는 복수의 의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흥미나 주변의 관심 또는 영리 목적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해지기도 한다[19].

비동의 촬영이나 유포를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범죄 사실을 경미하게 다루게 한다. 이에 대해 영국 양형기준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사적인 영상의 유포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추가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더불어 2019년 6월에는 법무부 장관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트부 장관이 법률위원회(LawCommission)로 하여금 2021년까지 현행 법률이 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적절히 따라가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현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법제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법은 늘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영국의 이러한 검토는 새로운 범죄 행위들이

현행 법률로 포섭되지 않는 법의 공백을 찾아 메우려는 노력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19-21].

4.4 일본

현재 일본은 비동의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를 구분하고 있다. 불법 촬영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해서 '도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동의 없는 성적 영상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만 형법 등의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역적으로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그 조례들의 취약한 곳이 여실히 드러나게 했고, 형사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게 했다. 이에 일본의 각 지방자체는 음란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민폐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하여 처벌 조건과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23].

비동의 유포 행위, 즉 불법 유포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에 '사사성적화상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을 마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사생활에서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있다.

이 법은 촬영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의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제3조제1항및제2항)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소수에게 제공하는 행위(제3조제3항)로 보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이란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을 포함한 성행위와 일부 또는 전부 노출된 상태의 성기 혹은 엉덩이, 가슴 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 이미지가 담긴 사진 및 전자기록 등을 의미하며(제2조제1항), 언어적 표현이나 음성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상 이미지도 제외된다[20]. 또한 촬영의 대상자가 제3자가 촬영물을 열람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을 승낙하거나 촬영한 경우 해당 촬영물은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제2조제1항). 따라서 촬영 시점에는 영상의 공개를 동의하고 그 이후에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촬영할 당시에 공개될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사적인 성적 화상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한 바 없지만 공표된 시점에는 승낙한 경우, 성적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처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된다[22].

일본에서는 유포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 Japan, IAJapan)는 ,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 판정, 터링 소프트웨어 보급 및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등 불법 콘텐츠 차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2013년 설립된 일본 인터넷안전협회(Safer Internet Association, SIA)도 2016년부터 경찰청 수탁으로 인터넷핫라인센터와 함께 사적인 성적 영상물의 삭제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22, 23].

4.5 독일

2004년에 이뤄진 개정 전의 독일 형법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생활 영역을 '일반적인 사생활 영역'과 '노출된 신체나 성행위와 관련된 은밀한 사적인 생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2004년 개정 이후 '고도의 사적인 생활 영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여 범죄에 의한 피해 범위와 의미를 더욱 확장했다. 여기에서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은 일반적인 사생활 영역보다 그 범위는 좁으나 은밀한 사적 생활 영역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 인격권 및 정보자기결정권의 하위 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5년 1월에 다시 조항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뿐 아니라 불법 유포로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동조 제2항은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이외에도 개인의 사회적 존엄과 명예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촬영 행위 자체가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된 이미지에 담긴 내용이 촬영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제3자가 촬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Baumhöfener)도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24].

4.6 프랑스

프랑스의 형법은 사생활 침해행위를 인격에 대한 침해로 규제한다.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Loi n°2016-1321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이 제정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형사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유포와 관련해서는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른 의견이 존재

했다. 「디지털공화국법」은 '잊힐 권리' 등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비록 촬영 및 기록 당시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면 비동의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것이 성적인 내용일 때는 사생활 침해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는 불법 유포 대상을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물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인 속성을 지닌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서도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처럼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해 구성요건을 특정해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 정의되는 인격권 침해행위에 성적인 속성을 가중적 성격의 구성요소로 추가함으로써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23].

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26]에 기재된 통계 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 사회의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95.4%이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6.1%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들 응답자(n=954) 중 97.6%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6가지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문하였다. 여기서 6가지 행위란, ① 사전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② 사전 동의 없이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③ 최초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재유포하는 행위, ④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⑤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⑥ 온라인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모욕과 성적 괴롭힘 등을 가하는 행위이다. 설문 결과, '상대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행위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한 자(95.7%)'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온라인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모욕과 성적 괴롭힘 등을 상대에게 가한 자(71.7%)'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았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촬영물, 이미지 촬영·제작자'를 꼽았으며, '촬영물, 이미지 유포 협박자'의 경우는 1+2+3순위 응답 기준 83.1%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36.0%)'과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32.4%)'이 지적되었다[26]. 2017년 9월,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2%가 '인지(알고 있으며 세부 내용도 자세히 알고 있음+알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조금 알고 있음+알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잘 모름)'하고 있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가장 힘써야 할 단계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 범죄자 처벌 단계(26.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단계별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n=261)'의 경우 '가해자 처벌 강화(80.2%)'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이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불법 촬영물 유포/신고 단계(n=230)'에서는 '보다 신속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34.6%)'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감소(매우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조금 줄어들 것 같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n=241)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처벌 및 정책이 약해서(58건)',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므로(35건)', '개인의 성적인 충동으로 일어나는 범죄라서(27건)' 등이 언급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신고 가능한 기관 및 센터에 대해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가장 많이 인지(82.8%)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74.3%)', '여성긴급전화 1366(62.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을 홍보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채널로는 'TV/라디오'가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이 17.7%,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법률 관련 교육'이 6.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26].

6.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조사 결과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해결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범죄가 해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36.0%)'과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32.4%)'이 지적된 점은 앞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얼마나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말해 준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일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디지털 사회는 법 제도가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에서 매우 진화한 방식의 범죄였다. 이 사건 이후 2020년 4월 24일 우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용 없이 엄벌할 것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정형 상향,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온라인 그루밍죄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독립몰수제 도입, 잠입수사 도입,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 소지자 처벌을 위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것이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음란물로 인한 사회질서의 파괴 정도로만 보지 않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영국 법률위원회의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입법에 앞서 3년의 시한을 두고 이루어진다. 이는 여론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하고자 하는 영국의 노력의 증거일 것이다. 또, 인터넷안전위원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관리하는 호주의 사례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즉 국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강력한 권한을 주고 범죄예방과 함께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추적할 수 없는 IP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국제 공조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 모두가 자신이 언제든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1] S. A. Kim. (2019). *Digital sexual violence and male-centered sex culture.* Gender Review. 53, 61-67.

[2] J. W. Jung. (1999). T*he status of sexual violence in cyber space Emergency Diagnosis Cyber Sexual Violence Status and Countermeasures.* women's committee of the new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3] D. H. Jang. & S. A. Kim. (2018). *Punishment and regulation measures following changes in online sexual violence crimes.* the general report of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1-457.

[4] H. A. Kim, S. H. Kim, Y. M. Kim, Y. J. Jang, S. H. Seo. & J. Y. Park. (2018).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the Support of Victims.* Seoul. Korean Committee for Women and Family

[5] H. B. Chung. (2018.7.15). *Digital sex crimes are social and personal murders. Seoul Newspaper* P. 2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6029004

[6] D. H. Jang. & S. A. Kim. (2018). *Punishment and regulation measures following changes in online sexual violence crimes.* the general report of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1-457.

[7] S. H. Seo. (2017). Characteristics of cyber sexual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ng it--Focused on non-consistent sexual photographs. Ehwa Gender Law. 9(3) 59-95

[8] The Korean womens's policy insitutye(2019)한국Online sexual violence victims and victims' protective measures. https://www.gov.kr/portal/gvrnReport/view/G1901000000037983?policyType=G00302&srchTxt=%EC%A3%BC%ED%83%9D

[9] See the Zoom in site for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68&srch_menu_nix=5hpWUOqC&srch_mu_site=CDIDX00005.

[10] B. C. Won. (2020). *Digital sex crimes and penalties are strictly protected.*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7773&page=1&kind=2

[11]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20). *Press release: Measures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35&call_from=naver_news

[12] H. A. Kim, S. H. Kim, Y. M. Kim, Y. J. Jang, S. H. Seo. & J. Y. Park. (2018).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the Support of Victims.* seoul. korea women's and family committee

[13] J. M. Ahn, S. K. Kim. & S. Y. Jung. (2018). *Survey on the*

institutional response of major foreign countries to digital sex crimes. Seoul.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14] Y. W. Kim. (2019.12) How the United States responds to sexual violenc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view trends 19. 18-27.

[15] National Sexual Vibration Resource Center. (2009). Statute com;Oation: Rape and Sexual Assault Laws.

[16] Zheng Wan. (2010). The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through Cell Phones and the Internet. *Korean Society for Criminal Policy 22(1).* 51-74.

[17] H. R. Shin. (2019). *Australia with no tolerance for 'digital sex crime'Two years in prison for refusing to comply with the deletion order*. Retrived From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9&no=812806

[18] Y. M. Sang. (2019). *Australia's policy and legal response to 'image-based abuse'*. Broadcasting System Communication Review Trend 19-2

[19] McGlinn, C., Rackley, E, Johnson, K, Henry, N, Flynn, A, Powell, A, Gabby, N., & Scott, A. (2019). Shattering lives and myths: A report on image-based sexual abuse. [Project Report]. Durham University: University of Kent.

[20] Minister of Justice. (2019). Law around non-conservative taking, making and sharing of sex ages to be reviewed.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law-around-non consensual-taking-making-and-sharing-of-sexual-images-to-be-reviewed.

[21] North Yorkshire Police, Fire & Cream Commissioner. (2018). Image-based sextal use report 2018.

[22] S. M. Yoon. (2017). The contents of Japan's Revenge Pornography Prevention Act and the current state of our country's response and its implications. *Law study. 68.* 199-222

[23] S. G. Bae. (2019). Japan's latest trends in the regulation of illegal video shooting and dissemination activitie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view trends 19.* 18-27.

[24] H. Y. Park. (2005). ISP's configuration responsibility under the German Copyright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Act. *quarterly copyright 18(1).* 29-43.

[25] D. H. Jang. & S. A. Kim. (2018). *Punishment and regulation measures following changes in online sexual violence crimes*. The general report of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1-457.

[26]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A report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only large countries related to digital sex crimes,* Southern Post Co., Ltd. Research Co

김 혜 진(Hyejin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 (석사)
· 2007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장애인 재활학 (석사)
· 2009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철학 (석사)
· 2009년 5월 : Teachers College,Columbia University 특수교육학 (박사)
· 2012년 8월 : 국회 입법자문위원
· 2012년 2월 : 국회 전 5급비서관
· 2010년 ~2020년 : 단국대, 백석대, 서경대 (외래교수)
· 2019년 6월 ~ 현재 : 글로벌 디지털 성범죄 정책 연구소 대표(Global Digital Sex Crime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 관심분야 : Digital Healthcare Policy, healthcare big data for early prediction of dementia. Senior Wellness IT, digital sex crime
· E-Mail : hk2188@caa.columbia.edu